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연월일	2022. 3.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22. 3.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2022. 1. 13. 字 시행)전부개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올바른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시민에게 보다 적법하고 알기 쉬운 조례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개정(안 제1조)
- 올바른 띄어쓰기 반영(안 제4조~제17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개이상 또는 2개기관”을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년월일”을 “연월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
“라한다”를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부일로 부터
특별한 사유”를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폐회중”을 “폐회 중”으
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정 할”을 “인정할”로, “자로 부터”를 “자로부터”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이”를 “의원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없다”를 “있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
지 않는 청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
로, “부의하지 아니하기”를 “부치지 않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이
해관계자간”을 “이해관계자 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휴회중”을 “휴회 중”으로, “재적의원 3분”을 “재적의
원 3분”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6조 중 “바에따”를 “바에 따”로 한다.

제17조 부칙 외의 부분 중 “구성·운영등”을 “구성·운영 등”으로,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을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을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원 소개 의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소개의견		

[별지 제2호 서식]

청원 철회 요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일부개정) 2008.09.08 의회규칙 <u>제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u> <u>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u> <u>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의</u> <u>정비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u> <u>치법 시행령</u>」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 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 은 청원이 다음 <u>각호</u>의 1에 해 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 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동일기관에 <u>2개 이상 또는 2</u> <u>개기관</u> 이상에 제출된 것 4. (생 략)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생 략)	<u><삭 제></u> 제1조(목적) ----- 「<u>지방자</u> <u>치법 시행령</u>」 제59조----- ----- ----- ----- ----- ----- -----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 ----- <u>각 호</u>-----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2개 이상 또는 2</u> <u>개 기관</u> ----- 4. (현행과 같음)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현 행과 같음)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

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이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연월일-----
-----.

③-----

----- "위원회"라 한다-----
-----.

④----- 회부일로 부터 특별한 사유----- 폐회 중-----

----- 기간 내-----

-----.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 인정할 -----

--- 자로부터 -----
-----.

②-----
의원의 -----

-----.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생략)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없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에 달성된 경우

2. 3. (생략)

제11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정하는 때-----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 -----
각 호-----
--- 부치지 않기-----
---.

1. -----
----- 이해관계자 간-----

2. 3.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사보고) ① -----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 5. (생략)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통지하여야 한다. ----
----- 휴회 중-----
----- 재
적의원 3분-----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
----- 각 호-----
-----.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징계) -----

----- 바에 따라----
-----.

제17조(준용규정) ----- 구성·
운영 등-----
----- 「구미시의
회 위원회조례」-----
-----.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